

공공도서관 기부 사례에 대한 도서관담당자의 인식 분석을 통한 기부활성화 방안 연구*

- 도서관 전문단체의 도서기증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on Plans for Do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Perceptions of Donation Cases at Public Libraries among Staff Members in Charge: With a focus on the book donation project by a professional organization of libraries

박 현 우 (Hyun Woo Park)**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운영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에서의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었던 기부 사례를 분석하였다. 2016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결과와 2016년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도서관 기부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donation cases at public libraries, to propose plans to overcome their limitations of deficient operation budgets, and to vitalize donations at librari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donation activities at public libraries with a group of staff members in charge at public libra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distribution project of books donated by publishers led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In addition to the outcomes of project participation, the study also examin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in-house donation activities at public libraries in 2016. Furthermore, it looked into previous studies and cases of library donations home and abroad, identifying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donation activities at public libraries and proposing plans to overcome them.

키워드: 공공도서관, 기부금(품), 기부활동, 기증도서, 한국도서관협회

Public Library, Donation, Donation Activity, Donation Book, Korean Library Association

* 본 연구는 2018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한국도서관협회 팀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hw99@kla.kr)

논문접수일자 : 2018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9월 1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179-208,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3.17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20년 전인 1997년 330개관에서 2007년 600개관으로, 그리고 2017년 1,010개관(2016년 12월 31일 통계기준)으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서 도서관 수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1개관 당 봉사대상 인구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미국 35,283명(2015년), 영국 15,465명(2014년), 독일 10,983명(2017년), 일본 39,093명(201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49,692명(2017년)으로 국내의 공공도서관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또한, 도서관 수의 증가와 함께 발전해야 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최신화, 필수 전문 인력인 사서의 충분한 배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문제들이 함께 개선되지 못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서관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효율화에 관한 부분은 필수적인 해결 과제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도서관 운영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 예산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가 및 지자체 등 상위기관의 일반회계 및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매

우 높은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역할 및 기능의 수행과 지역사회의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한 도서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마다 주요 현안 과제 및 중점 사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의 편성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 예산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현재의 의존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부금품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부문화가 발전한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사례 등(김효숙 2004)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기부금품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의 효과 및 사례가 다양하게 검증되었다. 국내에서도 느티나무도서관 등 기부금품을 통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한 사례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의 공공도서관 기부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공공도서관 운영 재원을 직·간접적으로 충당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및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기부 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기부 방식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 기부 활성화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노동조, 박경숙 2013),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기부 사례분석 연구(노영희 2014),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기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오동근, 김인식 2003) 등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대상 기증도서 보급사업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기부 활동의 현황 및 인식을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기부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사례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6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 참여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기증도서 보급사업의 참여 성과와 2016년도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부활동 추진 결과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부금 품과 기부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도서관 기부활동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국세청 세무용어사전).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단체의 경우 소득금액의 50%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단체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손금산입, 소득공제 한도로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기부를 받는 자의 세제혜택으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목적의 기부금이거나 명시된 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일 경우 손금산입(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공제를 포함한다)의 혜택을 부여하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할 경우에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도서관 기부활동

2.2.1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은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감면과 관련된 법률로는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와 제52조(특별공제)가 있으며, 법에서 개인에 대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및 개인사업자 손금산입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부금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법정기부금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부금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기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기정기

부금단체등의 범위)의 [별표6의2]에서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 기부활동과 도서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에 관한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공립 공공도서관은 법정기부금, 사립 공공도서관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품에 대한 혜택으로 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인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극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한 접수가 가능함으로 도서관 기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기부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자발적인 도서관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범국민적 홍보 및 참여 캠페인 등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 유형별 현황 및 효과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기부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와 도서관 전문단체의 향후 역할 및 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2.2 도서관 전문단체 기부활동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에 근거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도서관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따라 [별표6의2]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사단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따른 공익법인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정관 제5조(수익사업)에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서관과 사서의 발전을 위한 전문단체로서 목적달성을 위한 재원을 수익사업을 통해 적극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설립근거 자체가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으로 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및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역시 법인의 목적사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 역할을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한지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현장의 기부현황과 도서관 기부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기부활동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기부활성화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3 선행연구

2.3.1 도서관 기부 관련 선행연구

오동근과 김인식(2003)은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검토하고자 대구광역시의 8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부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manual)들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부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 및 훈련, 보상의 기준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서관장과 직원들의 기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동조와 박경숙(2013)은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부금을 활용한 작

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측면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절한 홍보 전략 수립, 정책적 측면으로 모금기관과 기부자의 기부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관리시스템 구축과 기부 지침서 작성 및 지자체 도서관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제도적 측면으로 도서관법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제시하였다.

노영희(2014)는 도서관에 기부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기부 사례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도서관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기부내용, 기부목적, 기부금 모집방법, 기부효과, 기부대상 선정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에 기부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부의 목적이 뚜렷하였으며,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나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도서관 기부내용은 도서관 건립,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관 및 콘텐츠 지원, ICT 지원, 운영비 지원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의 기부활성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러한 방안이 실천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었음을 강조하며,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서관 기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기부에 대한 홍보, 기부자에 대한 혜택 제공, 도서관 내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업무방식 개선, 기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기부 경험 및 사례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진행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3.2 전문단체 기부 관련 선행연구

신해진(2010)은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부금 관련 제도의 개선, 과세의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지원 확대를 제시하였다.

김은중(2015)은 국내문화예술단체들의 모금 전문가 인력 현황 또는 모금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통해, 기부금 모금전문가가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전문가 인력이 기부금 모금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모금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정립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홍문자(2015)는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비영리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대한적십자사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부금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대한적십자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홍보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정책이 마련되어

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부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지에 대한 피드백이 기부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행정을 社会的으로 보다 확고하게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기부금 모금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개정·보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단체의 기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문단체 차원의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확보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모금전문가 인력의 확보 및 양성, 기부금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모집단체의 지속적인 홍보, 기부금 모금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의 개정이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3 기부 활성화 및 제도개선 관련 선행연구

김명호와 김진희(2016)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영리법인별로 세제상 차이가 있는 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기부금 과세제도와 현행 법규 및 관련 도서, 선행 연구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국립대학병원 등에 준해 확대, 공익성 정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격차 감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채병완과 임승규(2017)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3년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

부금에 대한 세제방식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고소득자 및 근로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하여 기부문화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하고 위축된 기부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을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공제대상 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기부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주요 개선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조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적인 목적 수행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서관 기부활동 사례

이 장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도서관 기부활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의 도서관 기부활동 사례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기부금품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고, 국외의 기부활동으로는 도서관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의 도서관 기부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서관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2016년 출판계 기증

도서 보급사업'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3.1 국내 도서관의 기부금품별 기부활동 사례

3.1.1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기부 사례

1) 기적의 도서관

2003년도에 MBC '느낌표' 프로그램과 함께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구현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건립기금은 문화방송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 선정된 책의 판매수익금을 사용하였다.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하였고, 부지 선정 및 도서관 건립 실무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담당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개의 기적의도서관이 건립되었다. 공영방송사의 사회공헌 활동과 독서문화발전을 위한 전문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된 도서관 기부활동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책읽는사회문화재단 홈페이지).

2) KB 국민은행 작은도서관 조성('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KB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문화체육관

광부와 MBC가 주체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여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50여 곳의 62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였다. 특히 작은도서관 전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단순한 작은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비용의 지원이 아닌 도서관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기본요소인 시설, 장서, 전문인력의 확보 및 활용 부분과 지자체의 책임감 있고 지속적인 지원 부분을 신청 대상 및 조건에 필수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 간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그 성과의 지속적인 확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국민은행 희망별 홈페이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홈페이지).

3) 부산 연제도서관, 경동건설(주) 기부채납

연제도서관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인 경동건설(주)의 기부채납을 통해 건립되었다. 2011년 8월 부산광역시는 연제구청, 경동건설(주)과 함께 연제도서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7월 17일에 개관되었다. 경동건설(주)은 지역사회에서 일군 기업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체 부지에 비용과 기술을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인근 소공원 부지를 포함하여 연제구청에 기부하였다. 연제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와 연제구청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시설과 장서 등을 구축하였다. 도서관 부지 및 건립비용의 기부 방식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부 사례임을 확인하였다(부산일보 2014).

3.1.2 기부금(현금) 및 도서(물품) 기부 사례

1)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딸을 잃은 가족이 평소 책을 좋아했던 딸을 위해 낸 건립지원금으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이다. 2003년 불의의 사고로 딸 이진아양이 숨지자 가족들은 딸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 건립기금 50억 원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를 선정하여 시민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을 이진아양의 생일에 맞춰 개관하였다. 개인적인 슬픔을 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승화한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도서관이다. 결과적으로는 도서관 건립 기부 사례로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연세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기업과 지자체의 MOU 체결에 따른 부지 및 건립 기부가 아닌 기부자 개인이 기부금 50억 원을 지자체에 직접 기부한 사례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건립기금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부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서대문구립도서관 홈페이지).

2) 느티나무도서관재단,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운동

경기도는 2016년 8월부터 정보소외계층에 기부로 모은 책을 기증하는 책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운동'을 사업명으로 경기도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경기도민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후원하

고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재단 내 전담부서인 책나눔사업본부를 두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책이 꼭 필요한 단체나 기관에 책을 지원하고, 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 기증 프로그램이다. 책나눔운동 사례는 재단법인으로서 「정관」 제3조(목적)에 따른 설립 목적인 누구에게나 문턱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하고 어울리는 문화를 삶터에 뿌리내리기 위해 서리는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자체적인 도서구입비 예산만으로는 자료입수의 한계가 있는 도서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느티나무도서관재단 홈페이지).

3) 칠포재즈위원회, 포은중앙도서관 도서관구입비 기부

2007년 이후 매년 여름 포항의 칠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칠포재즈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사)칠포재즈축제위원회는 2015년 8월에 개최된 재즈공연의 수익금 1천 500백만 원을 2015년 11월 18일 포항시청을 방문하여 포은도서관 도서관구입비 목적으로 기부하였다. 이와 같은 기부 사례는 매년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은 아니며, 일회성 기부이지만 지역 사회의 축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이 문화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인 도서관에 기부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역 주민의 세금과는 별도의 민간 차원의 기부금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쓰여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서관 기부의 긍정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경북일보 2015).

3.1.3 도서관 자원봉사 등 재능기부 사례

1) 10월의 하늘

‘10월의 하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국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도서관 과학강연’ 행사이다. 재능 기부자들에게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적 재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우주와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8회째 진행되고 있는 ‘10월의 하늘’은 매년 30여 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재능기부는 강연자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 및 진행, 행사 주제가와 포스터 및 영상 제작 등 모든 부분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관 운영예산 중에서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사례비의 한계로 다양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수준 높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도서관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부 사례가 될 것이다(10월의 하늘 홈페이지).

2) 소프트웨어에 물들다

‘소프트웨어에 물들다’는 ‘10월의 하늘’과 같은 공공도서관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강연대

상은 주로 초등학생들이며,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과 학부모도 포함된다. 강연에서는 강연대상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며 왜 배워야 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민석 교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사진행을 위한 자원봉사단이 함께 재능을 기부하여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10월 전국 18개 공공도서관에서 총 36개의 강연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17년 5월에는 2번째 행사로 전국 33개 공공도서관에서 66개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과 소프트웨어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시점에서 교육이 필요한 적절한 주제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의 자발적인 기획과 참여로 이루어진 기부 사례로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시의적절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도서관의 장서 및 전문 인력인 사서와 함께 준비됨으로써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재능기부 이후 꾸준한 도서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소프트웨어에 물들다 홈페이지).

3.2 국외 도서관 기부활동 사례

Visualizing Funding for Libraries(이하 ‘VFL’이라 함)은 FOUNDATION CENTER(이하 ‘FC’

이라 함)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도서관들이 지원 받는 각종 기금 및 기부금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http://libraries.foundationcenter.org>)이다. 도서관에서는 VFL을 통하여 미국의 각 지역별로 어떠한 도서관 지원 기금이 있는지 검색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 관련 기부 내역은 2015년부터 기록해 왔으며, 매주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FC에서는 FOUNDATION MAPS을 통해 미국 내의 각종 기부·기증 활동에 대해서 방문자들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기관, 피기부기관, 기부에 대한 상세한 목적, 기부금의 총액, 기부금의 이름 등을 포함한 미국 내의 기부의 흐름을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에 지원되는 기부금의 상세 내역은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도서관과 관련된 기부금 정보는 학술도서관, 기록물과 소장물, 정부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미디어센터로 총 5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 대분류 내에서 기부기관(FUNDERS), 수령기관(RECIPIENTS), 기부금(GRANTS) 등의 상세 기증 정보를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 기부기관 별로 기부 및 기증 정보를 정렬할 경우, 이용자들은 기부기관의 목표와 배경, 현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 프로그램 및 기관 연락 정보(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사이트 주소)는 물론 FC에서 취합한 기부기관의 재정적 정보와 지난 기부 정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VFL을 통해 미국의 도서관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 분야의 기부활동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FC에서는 미국 내 각종 기부·기증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기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기부에 있어서도 2006년부터의 수집된 모든 공공도서관 기부자, 기부금, 기부 상세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공공도서관 기부 환경 구축 및 문화 조성이 아직 열악한 국내의 상황에서는 도입 여부 및 활용 가치 등을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기증 사업

본 사업은 2015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출판계의 대표 전문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그리고 도서관계의 대표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가 ‘국민 독서문화 증진 및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서기증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출판계 전문단체 소속 64개 회원 출판사로부터 1,566종 176,141권을 기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3,980,000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6년 7월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출판계에서 기증한 도서를 정가로 산정하면 총 2,154,450,800원으로 이는 2016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총 예산 75,079,944,000원에 2.87%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지역 각각의 2016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에 해당된다(한국도서관연감 2016).

출판계 기증도서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의 740개 도서관(공공도서관 590개관)에 모두 배포되었다. 당초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었지만 국가, 대학, 전문, 학교 등 다

른 관중의 도서관에서도 출판계 기증도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관중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역별 기증도서 신청 현황은 신청 도서관 담당자의 관심도, 사업의 홍보방식 및 절차, 기증도서의 소장여부 및 활용가치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전국 모든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결과를 통해 그 지역의 도서관 수 및 자료구입비 예산과도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공공도서관 자료입수의 열악한 현실을 반증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실제 전국 740개 도서관에 정가 기준 2,154,450,800원 상당의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 176,141책의 장서를 배포함으로써 도서정가제 시행 및 자료구입비 예산 감소로 인해 부족한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의 효과 또한 모든 관중의 도서관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관 현장의 어려움과 적극적인 노력은 모든 관중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향후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도서기증 사업을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1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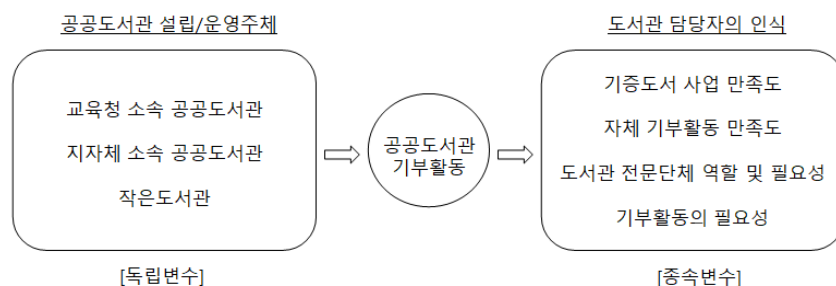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공공도서관 기부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대상을 선정하고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4.1.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주체를 크게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에 대한 운영 주제별 공공도서관 소속 담당자의 만족도, 기부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전문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그림 1> 참조).

4.1.2 설문조사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6년에 실시한 출판계 기증도서 공공도서관 보급 사업의 참여기관 총 590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중에서 기증도서 신청과정에서 도서관 담당자 정보(이메일 및 연락처)를 확보한 431명의 담당자



<그림 1> 연구 모형

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9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31명의 도서관 담당자 중 100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이중 2건이 중복 응답으로 총 98건이 회신되어 22.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98부이다.

이 연구의 설문지 문항 구성은 참여 공공도서관 일반사항 및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도서관 전문단체 중심의 기부활동에 대한 사항, 개별 공공도서관 단위의 기부활동에 대한 사항,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 선호도 및 인식 등 종합의견에 대한 사항으로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설립/운영주체별 공공도서관과 종속변수인 도서관 담당자의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특성에 따른 담당자의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기부활동과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은 도서관 담당자가 인식하는 기부활동 효과와 만족도, 애로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4.2 데이터 분석

이 절에서는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 참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인식과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금품 모집활동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

도 검증을 실시하고 가설 검증을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사항

공공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기부활동 담당은 대부분 5년 미만의 도서관 근무 경력에 해당되는 직원이 많았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담당부서 및 업무는 기부금품 모집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자료 조직 및 정리부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다양한 업무의 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었다. 사서자격증 보유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63.3%가 사서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36.7%는 사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었다. 응답자의 소속 지역은 울산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자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로는 교육청 직영(15.3%), 지자체 직영(18.4%), 지자체 위탁(22.4%), 공립 작은도서관(12.2%), 사립 작은도서관(29.6%), 기타(2.0%,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설립/운영주체별 공공도서관에서 기부활동에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표 1〉 참조).

전체 응답자의 62.2%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기부 관련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모두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부 관련 업무 지침 및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64.3%, 별도의 지침 및 규정이 없는 곳은 35.7%에 해당되었다. 2016년도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는 곳은 전체 응답자의 28.6%였으며, 71.4%에 해당되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도서관 근무경력*	5년 미만	46.9	
	5년 이상 - 10년 미만	24.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3	
	15년 이상 - 20년 미만	7.1	
	20년 이상	5.1	
담당부서/업무	자료 조직 및 정리	26.5	
	참고봉사 및 열람	10.2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3.5	
	관리 및 지원 등 행정업무	24.5	
	기부금품 모집 전담	0.0	
	기타	15.3	
보유 사서자격증	준 사 서	3.1	
	2급 정사서	54.1	
	1급 정사서	6.1	
	없음	36.7	
도서관 소속 지역	서울특별시	16.3	
	부산광역시	2.0	
	대구광역시	2.0	
	인천광역시	6.1	
	광주광역시	1.0	
	대전광역시	1.0	
	울산광역시	0.0	
	세종특별자치시	1.0	
	경기도	14.3	
	강원도	7.1	
	충청북도	12.2	
	충청남도	13.3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2	
	경상북도	3.1	
	경상남도	4.1	
	제주특별자치도	5.1	
	도서관 설립/운영주체	교육청 직영	15.3
		지자체 직영	18.4
지자체 위탁		22.4	
공립 작은도서관		12.2	
사립 작은도서관		29.6	
기타		2.0	
합 계	98	100.0	

* 평균값 86.74, 표준편차 69.823, 최소값 4, 최대값 309.

〈표 2〉 일반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기부 관련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여부	담당부서/전담인력 모두 배치	8	8.2
	담당부서만 배치	5	5.1
	전담인력만 배치	24	24.5
	모두 미배치	61	62.2
기부 관련 업무 지침 및 규정 유무	있다	63	64.3
	없다	35	35.7
개별 도서관 단위 자체 기부 활동 유무	있다	28	28.6
	없다	70	71.4
합 계		98	100.0

4.2.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 모두 고유치가 1이상이고 각 항목별 요인적재치가 모두 0.598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명된 총 분산은 80.401%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출된 요인 1을 '공공도서관 자체적인 기부활동 만족도', 요인 2를 '출판계 기증도 보급사업 만족도', 요인 3을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의 역할 및 필요성', 요인 4를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필요성'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4개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요인 1이 0.949, 요인 2가 0.921, 요인 3이 0.822, 요인 4가 0.783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3〉 참조).

4.2.3 조사 내용 분석

1)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의 만족 정도는 기증도서의 양적

질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증도서의 양적 수준(평균 4.07점) 및 질적 수준(평균 4.04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기증도서 보급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평균 3.99%)에 있어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4〉 참조). 이를 통해 출판계 기증도서가 신청 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의 신청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표 5〉와 같이 기증도서의 질적 수준(31.0%), 선착순 신청방식(19.3%), 짧은 기증도서 신청 기간(18.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기증도서의 한정된 종류와 수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보다 많은 종류의 기증도서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증도서의 인수 및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표 6〉과 같이 기증도서의 이용률 저조(38.6%), 기증출판사 보상 차원의 홍보 제공(21.9%) 등이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증도서의 이용률 저조는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장서개발 정책과 이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도서 선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방적인 도서기증 방식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표 3〉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 1	요인2	요인 3	요인 4	공통성(Communality)
6-3	0.926	0.015	-0.011	0.192	0.895
6-4	0.912	-0.083	0.045	0.137	0.860
6-5	0.908	0.098	-0.055	0.129	0.854
6-1	0.906	0.044	0.073	0.115	0.842
6-2	0.886	0.154	0.048	-0.135	0.829
3-5	0.059	0.893	0.051	0.039	0.804
3-3	-0.038	0.880	0.272	0.020	0.850
3-2	-0.014	0.850	0.172	-0.070	0.757
3-1	0.026	0.820	0.273	-0.271	0.821
3-4	0.330	0.598	-0.040	0.248	0.529
9-6	0.159	0.170	0.904	0.270	0.944
9-7	0.293	0.164	0.856	0.266	0.916
9-5	-0.192	0.207	0.806	0.067	0.734
9-4	-0.191	0.250	0.614	0.477	0.704
9-1	0.111	0.061	0.211	0.883	0.839
9-2	0.179	-0.154	0.098	0.819	0.735
9-3	0.113	-0.018	0.363	0.779	0.752
고유값(Eigen-value)	4.478	3.554	2.959	2.959	-
분산설명(%)	26.339	20.908	17.405	15.750	80.401
Cronbach α	0.949	0.921	0.822	0.783	0.860

〈표 4〉 기증도서 사업 참여 도서관 담당자 만족도(n=98)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증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4.04	0.836	2	5
기증 도서의 양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4.07	0.777	2	5
기증 도서의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	3.88	0.877	2	5
기증 사업에 따른 재정 확충 및 절감 측면에 대한 만족도	3.82	1.009	1	5
기증 사업 참여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3.99	0.855	2	5

〈표 5〉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 신청 과정 애로사항(n=9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증도서의 질적 수준(종류, 품질 등)	45	31.0
선착순 신청방식	28	19.3
짧은 기증도서 신청 기간	27	18.6
기증도서의 양적 수준(수량, 금액 등)	21	14.5
기증도서 홈페이지의 신청 절차	18	12.4
기타	6	4.2
합계	145	100.0

〈표 6〉 기증도서 인수 및 활용 과정 애로사항(n=9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증도서의 이용률 저조	44	38.6
기증출판사 보상 차원의 홍보 제공	25	21.9
기증도서 발송기간 지연	17	14.9
신청도서의 오류 배송 및 파손	6	5.3
기타	22	19.3
합계	114	100.0

기증도서 보급사업의 전체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으로는 〈표 7〉과 같이 도서관별 신청도서 종류 및 수량 제한(28.6%), 도서관장서로 활용 가능한 도서 부족(24.1%)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증도서의 한정된 종류와 수량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기증도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자체 기부활동 현황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활동 실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98명 중 개별 공공도서관 단위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서는 28명으로 28.6%에 해당하였다.

자체적인 기부활동 횟수 〈표 8〉과 같이 1-4회가 전체 응답자의 53.5%로 가장 많았으며, 알 수 없다는 의견도 21.4%로 나타났다. 자체적인 기부활동이 있는 도서관에서도 실제 기부

〈표 7〉 기증도서 보급사업 참여 전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n=9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도서관별 신청도서 종류 및 수량 제한	38	28.6
도서관장서로 활용 가능한 도서 부족	32	24.0
본 사업의 단기간 추진 및 1회성 실시	23	17.3
기증도서의 이용률 저조	23	17.3
기증도서 신청 및 인수 등 진행 절차	10	7.5
기타	7	5.3
합계	133	100.0

〈표 8〉 자체적인 기부활동 실시 횟수(n=28)

구분	빈도(명)	백분율(%)
1-2회	9	32.1
3-4회	6	21.4
5-6회	1	3.6
7-8회	2	7.2
9회 이상	4	14.3
알 수 없음	6	21.4
합계	28	100.0

활동 실시 횟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알 수 없다는 의견을 통해서 기부 경험 및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활동의 주된 추진 목적으로는 <표 9>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관심 유도(57.1%), 도서관장서 확충(28.6%)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경험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방법으로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활동의 진행방식은 <표 10>과 같이 자체홍보/모집(41.0%), 지역사회 협력(33.3%), 관련단체 연계(17.9%)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다양한 방식의 기부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기업기부 유치 방식은 비교적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종류로는 <표 11>과 같이 도서기부(41.7%), 재능기부(28.3%)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도서관입비 예산

<표 9>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주된 추진 목적(n=28)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관심 유도	16	57.1
도서관장서 확충	8	28.6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7.1
도서관 예산 확보	1	3.6
장서 확충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1	3.6
합계	28	100.0

<표 10> 자체적인 기부활동 진행 방식(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체홍보/모집	16	41.0
지역사회 협력	13	33.3
관련단체 연계	7	18.0
기업기부 유치	2	5.1
기타	1	2.6
합계	39	100.0

<표 11>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품 종류(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도서기부	25	41.7
재능기부	17	28.3
도서 이외 물품기부	9	15.0
금전기부	8	13.3
기타	1	1.7
합계	60	100.0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기부금품 중 실제로 기증도서를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표 12>와 같이 알 수 없다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미만(21.4%),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7%)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알 수 없음의 답변이 가장 많은 것은 도서관 담당자들이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의 효과는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대가로 기부자(단체)에 제공하는 보상방식으로는 <표 13>과 같이 보상 없음(33%), 기부금영수증(15.4%), 도서관 이용혜택(15.4%) 등이 높게 나타났다. 보상 없음이 가장 많은 것은 기부활동에 대한 경험과 인

식의 부족으로 도서관의 자체적인 적절한 보상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3) 자체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이 종합적인 만족도(평균 3.86점)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에 따른 재정 확충 및 절감 측면에 대한 만족도(평균 3.79점),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평균 3.75점)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자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부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부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표 15>와 같이 기부금품에 대한 보상방식

<표 12>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품 모집금액(n=2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알 수 없음	17	60.7
10만원 미만	6	21.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	3.6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	10.7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0	0.0
1,000만원 이상	1	3.6
합계	28	100.0

<표 13>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품 보상방식(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보상 없음	13	33.3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	6	15.4
도서관 이용혜택	6	15.4
감사장 및 감사인사	5	12.8
기부자(단체) 기념물 설치 등 홍보	5	12.8
기타	4	10.3
합계	39	100.0

〈표 14〉 자체적인 기부활동에 대한 담당자 만족도(n=2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모집한 기부금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3.71	0.937	2	5
모집한 기부금품의 양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3.71	1.117	2	5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	3.75	1.005	2	5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에 따른 재정 확충 및 절감 측면에 대한 만족도	3.79	1.134	1	5
자체적인 기부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3.86	0.891	2	5

〈표 15〉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애로사항(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부금품에 대한 보상방식 결정	12	26.7
기부금품 모집방식 결정	11	24.4
기부금품의 활용방식 결정	9	20.0
기부금품 모집대상 선정	6	13.3
기부금품의 종류 선정	4	8.9
기타	3	6.7
합계	45	100.0

결정(26.7%), 기부금품 모집방식 결정(24.4%), 기부금품의 활용방식 결정(20.0%)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부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적절한 기부활동의 지침 또는 활용사례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기부금품 모집활동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표 16〉과 같이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의 부재(30.9%),

기부처 및 기부자 발굴(21.8%), 적절한 보상방식 부족(20.0%)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담당자들은 기부활동에 대한 전담인력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품 활용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표 17〉과 같이 기부금품의 종류별 효과적인 활용방식 부재(30.0%), 이용자 만족도 및 활용실적 저조

〈표 16〉 자체적인 기부금품 모집 과정의 애로사항(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의 부재	17	30.9
기부처 및 기부자 발굴	12	21.8
적절한 보상방식 부족	11	20.0
관련 활동예산 부족	8	14.6
기부활동 관련 전문지식 부족	6	10.9
기타	1	1.8
합계	55	100.0

〈표 17〉 자체적인 기부금품 활용 과정 애로사항(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부금품의 종류별 효과적인 활용방식 부재	12	30.0
이용자 만족도 및 활용실적 저조	7	17.5
기부금품의 부족한 모집	6	15.0
희망 기부금품의 미확보	6	15.0
기부자(단체)의 기부목적과 실제 기부금품 활용 내용의 적합성	5	12.5
기타	4	10.0
합계	40	100.0

(17.5%)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부활동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서관 활동에 필요한 기부금품의 종류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전략적인 기부활동을 수행할 때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기부활동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표 18〉과 같이 기부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 부족(29.4%),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25.5%)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서관 기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기부활동 개발과 추진, 체계적인 기부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선호도

기부금품의 종류별 선호도는 〈표 19〉와 같이 재능기부(37.8%), 기증도서(27.6%), 기부금

(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재능기부(33.3%),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증도서(45.0%), 작은도서관에서는 재능기부(43.9%)가 가장 선호하는 기부금품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항목에 해당되는 기부금품으로 기부활동을 부족한 운영 예산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기부금품 모집방식으로는 〈표 20〉과 같이 관련 전문단체 연계(41.8%), 지역사회 협력(31.6%)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관련 전문단체 연계(53.3%),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관련 전문단체 연계(50.0%),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협력(41.5%)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집방안으로 전문단체의

〈표 18〉 자체적인 기부활동 활성화 저해의 주된 원인(n=28, 다중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부자(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 부족	15	29.4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부재	13	25.5
기부활동에 관한 지침 또는 매뉴얼 부재	10	19.6
기부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의 한계	7	13.7
국가 및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관심 및 지원 부족	6	11.8
합계	51	100.0

〈표 19〉 설립/운영주체별 모집 희망(선호) 기부금품

구분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교육청		지자체		작은도서관		기타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재능기부	37	37.8	5	33.3	14	35.0	18	43.9	0	0.0
기증도서	27	27.6	1	6.7	18	45.0	8	19.5	0	0.0
기부금(현금)	19	19.4	4	26.7	3	7.5	11	26.8	1	50.0
건립/건축(리모델링 포함)	8	8.2	3	20.0	1	2.5	3	7.3	1	50.0
물품기부	7	7.2	2	13.3	4	10.0	1	2.5	0	0.0
합계	98	100.0	15	100.0	40	100.0	41	100.0	2	100.0

〈표 20〉 기부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방식

구분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교육청		지자체		작은도서관		기타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관련 전문단체 연계	41	41.8	8	53.3	20	50.0	13	31.7	0	0.0
지역사회 협력	31	31.6	4	26.7	9	22.5	17	41.5	1	50.0
지역주민 대상 홍보/모집	13	13.3	1	6.7	4	10.0	8	19.5	0	0.0
기업기부 유치	13	13.3	2	13.3	7	17.5	3	7.3	1	50.0
합계	98	100.0	15	100.0	40	100.0	41	100.0	2	100.0

역량과 지역 사회의 자원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기부금품 활용방식으로는 〈표 21〉과 같이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38.8%),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최신화(23.5%), 도서관장서 확충(20.4%)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예산 총당(33.3%),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37.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43.9%)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한 기부금품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도서관장서 보다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시설 및 장비에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기부금품에 대한 보상방식으로는 〈표 22〉와 같이 기부금영수증(35.7%), 감사장 및 감사인사(27.6%), 도서관 이용혜택(20.4%)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기부금영수증(33.3%),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감사장 및 감사인사(37.5%), 작은도서관은 기부금영수증(39.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모집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감사인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 재원의 대안(국가/지자체의 일반회계와 보조금 제외)으로 가장 선호하

〈표 21〉 기부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부금품 활용방식

구분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교육청		지자체		작은도서관		기타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38	38.8	4	26.7	15	37.5	18	43.9	1	50.0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최신화	23	23.5	4	26.7	10	25.0	9	22.0	0	0.0
도서관장서 확충	20	20.4	2	13.3	13	32.5	5	12.1	0	0.0
도서관 운영예산 충당	17	17.3	5	33.3	2	5.0	9	22.0	1	50.0
합계	98	100.0	15	100.0	40	100.0	41	100.0	2	100.0

〈표 22〉 기부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부금품 보상방식

구분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교육청		지자체		작은도서관		기타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	35	35.7	5	33.3	13	32.5	16	39.0	1	50.0
감사장 및 감사인사	27	27.6	4	26.7	15	37.5	8	19.5	0	0.0
도서관 이용혜택	20	20.4	2	13.3	5	12.5	13	31.7	0	0.0
기부자(단체) 기념물 설치 등 홍보	14	14.3	4	26.7	5	12.5	4	9.8	1	50.0
기타	2	2.0	0	0.0	2	5.0	0	0.0	0	0.0
합계	98	100.0	15	100.0	40	100.0	41	100.0	2	100.0

는 방식에 대해서는 〈표 23〉과 같이 각종 지원 사업 유치(37.8%), 지역 사회와의 제휴/협업(22.4%), 자원봉사(18.4%), 개인/단체 등의 기부금품(11.2%)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각종 지원사업 유치(53.3%),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각종 지원사업 유치(50.0%), 작은도서관은 지역 사회와의 제휴/협업(26.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각종 지원사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반면,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운영 재원에 대해 모두 적절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관한 인식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은 〈표 24〉와 같이 기부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도서관 전문단체 지원의 필요성(평균 4.34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도서관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한계성(평균 4.24점),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측면의 기여도(평균 4.06점)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서관 전문단체 기부활동의 모집방식/활용방식/보상방식의 다양성(각 평균 3.99점)과 도서관 예산 확충 대안으로서의 가능성(평균 3.80점)에 대해서도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관 담당자의 기부활동 경험을 통해 기부활동

〈표 23〉 선호하는 공공도서관 운영 재원 대안(국가/지자체의 일반회계와 보조금 제외)

구분	전체		설립/운영주체별							
			교육청		지자체		작은도서관		기타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빈도 (명)	%
각종 지원사업 유치 (국고 및 기금 등)	37	37.8	8	53.4	20	50.0	9	22.0	0	0.0
지역 사회와의 제휴/협업	22	22.4	2	13.3	8	20.0	11	26.8	1	50.0
자원봉사	18	18.4	3	20.0	7	17.5	8	19.5	0	0.0
개인/단체 등의 기부금품	11	11.2	0	0.0	1	2.5	9	21.9	1	50.0
타 도서관과의 자원공유 등 협력	10	10.2	2	13.3	4	10.0	4	9.8	0	0.0
합계	98	100.0	15	100.0	40	100.0	41	100.0	2	100.0

〈표 24〉 기부활동에 관한 공공도서관 담당자 인식(n=9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 측면의 기여도	4.06	0.797	1	5
도서관 예산 확충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3.80	0.963	1	5
기부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도서관 전문단체 지원의 필요성	4.34	0.688	2	5
도서관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한계성	4.24	0.643	2	5
도서관 전문단체 기부활동에 대한 모집방식의 다양성	3.99	0.831	1	5
도서관 전문단체 기부활동에 대한 활용방식의 다양성	3.99	0.767	1	5
도서관 전문단체 기부활동에 대한 보상방식의 다양성	3.99	0.739	2	5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시급한 추진 과제에 있어서는 〈표 25〉와 같이 공공도서관 대상 전국단위의 지속적인 기부금품 모집사업 및 활동 개발(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국민 차원의 바람직한 도서관 기부문화 조성(29.6%), 기부자(단체) 및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17.3%), 공공도서관 단위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요구(17.3%)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전문단체로서 전국 단위의 도서관 기부활동과 기부문화 조성의 역할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 26〉과 같이 총 98명의 응답자 중 37명이 응답하였으며, 의견없음을 응답한 3명을 제외한 34명의 주요 응답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사를 결과를 통해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설립/운영주체별 차이 분석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로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표 25〉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의 역할(n=9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공도서관 대상 전국단위의 지속적인 기부금품 모집사업 및 활동 개발	34	34.7
대국민 차원의 바람직한 도서관 기부문화 조성	29	29.6
기부자(단체) 및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7	17.3
공공도서관 단위의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요구	17	17.4
기타	1	1.0
합계	98	100.0

〈표 26〉 기부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단체에 요구하는 내용

구분	요구사항
법/제도적 개선	개별 공공도서관 차원의 적극적인 기부활동 및 자체적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 요구
	도서관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정책 도입 요구
도서관 기부활동 인식개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노력
정기적인 현장요구 반영	도서관 기부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세미나, 워크숍 등) 마련
통합시스템 도입	공공도서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과 기부금영수증 발생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도서관 프로그램 강연자 등 재능기부자(자원봉사 포함)의 체계적인 모집 및 연결 지원
	도서관 기부자(단체)의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식 도입
투명성 제고	모집된 기부금품 분배 절차의 투명성 제고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기부금품 배포 비중 확대
도서관 전문단체 역할 강화	도서관 전문단체에서 모금전문가(펀드레이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사서들이 직접 체계적인 기부활동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지속적인 기부활동 추진
기타	지자체 내 도서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하는 방식 도입
	작은도서관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기부활동 지원 방식 개발 및 도입
	기부금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공공도서관 자체적인 기부활동 만족도'와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필요성'에 있어서는 유의 확률이 $p < 0.05$ 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체 기부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하나 이하의 케이스를 가지므로 사후검정을 수행할 수 없었고,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필요성'에서 지자

체 소속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들이 기부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7〉 참조).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운영 예산 및 장서 등의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기부활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출판계 기

〈표 27〉 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 도서관 담당자 인식 차이

구분	설립/운영주체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p값	사후 검증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 만족도	교육청(a)	15	4.040	0.6727	0.293	0.830	n.s.
	지자체(b)	40	3.960	0.8167			
	작은도서관(c)	41	3.951	0.7573			
	기타(d)	2	3.500	0.7071			
공공도서관 자체적인 기부활동 만족도	교육청(a)	1	5.000		3.283	0.038*	n.s.‡
	지자체(b)	9	3.111	0.8724			
	작은도서관(c)	16	4.063	0.8286			
	기타(d)	2	3.700	0.4243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단체의 역할 및 필요성	교육청(a)	15	4.233	0.5936	1.337	0.267	n.s.
	지자체(b)	40	3.938	0.6117			
	작은도서관(c)	41	4.079	0.5901			
	기타(d)	2	4.500	0.7071			
공공도서관 기부활동 필요성	교육청(a)	15	4.267	0.5521	4.251	0.007*	b<c (Scheffe검증)
	지자체(b)	40	3.783	0.7340			
	작은도서관(c)	41	4.268	0.6111			
	기타(d)	2	4.000	0.4714			

‡ 하나 이상의 집단이 하나 이하의 케이스를 가지므로 '자체 기부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사후검정을 수행할 수 없음.
* p < 0.05

증도서 보급사업의 만족도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수의 부족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 집단 간에 인식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전문단체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의 경험 및 인식 부족으로 공공도서관의 자체적인 기부활동과 도서관 전문단체의 차이점 및 효과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3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한계점 및

개선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 방안을 공공도서관, 도서관 전문단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3가지 측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중심의 기부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도서관 내에 기부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하여 기부활동의 전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부금품의 종류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한 기부활동이 일회성 이벤트 및 일시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기부활동의 성과를 도서관 운영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

마련 및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공익적인 목적의 도서관 기부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집한 기부금품의 내역 및 활용실적을 기부자(단체) 및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운영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도서관 직원의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도서관 전문단체 중심의 기부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도서관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대상 기부자(단체)를 체계적으로 모집하고 공익법인으로서 다양한 보상방식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공공도서관 단위에서의 기부활동의 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자(단체)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종류별로 모집된 기부금품의 정보를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희망하는 도서관에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기부금품 모집에서 신청, 배분, 활용 및 보상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도서관 기부 통합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소외지역계층 공공도서관 등 자체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기부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부활동의 혜택과 효과를 보다 많은 도서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관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문단체로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렴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의 효과와 공익성을 도서관 관계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국내의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조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 수립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및 지자체 중심의 기부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의 추진 현황과 활용 실적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기부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별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기부금품의 종류와 모집방식, 활용방식, 보상방식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기부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적인 실질적인 어려움을 진단하여 공공도서관에서 기부금품 모집활동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익목적의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기부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범위의 확대 및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우

수 기부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운영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2016년 도서관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한 출판계 기증도서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증도서 사업에 참여한 결과와 2016년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 차이 분석결과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기부활동의 경험 부족으로 만족도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역할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는 아직도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에 대한 도서관 담당자의 인식조사만으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기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설립/운영주체별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구체적

인 기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기부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기부금품과 모집방식, 활용방식에 작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표본 수의 부족으로 집단 간에 정확한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셋째, 부족한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의 대안으로 국고 및 기금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유치를 선호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지원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관련예산의 범위와 규모 및 목적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개별 공공도서관 단위의 다양한 기부활동이 시도되고, 도서관 전문단체 차원의 전국단위의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기부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공공도서관 기부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가 차원의 기부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정책 개발하여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한다면, 도서관 직원은 물론 국민들의 공공도서관 기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공공도서관에서 기부금품의 투명한 활용과 정확한 활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공공도서관 기부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호, 김진희. 2016.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9(3): 1183-1201.
- 김은중. 2015.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 김효숙. 2004. 뉴욕공공도서관의 재정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 133-140.
- 노동조, 박경숙. 2013.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84-186.
- 노영희. 2014.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기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11-133.
- 신해진. 2010.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 오동근, 김인식. 2003. 공공도서관의 기부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222-226.
- 채병완, 임승규. 201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73: 350-351.
- 한국도서관협회. 2007. 『한국도서관협회 중장기발전방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6. 『한국도서관연감 2016』.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홍문자. 2015. 『비영리 공공기관 기부금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Visualizing Fundingfor Libraries. 2017. Homepage [online]. [cited 2017.10.3].
<<http://libraries.foundationcenter.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 Byung-Wan and Seung-Kyu Im. 2017. "A Study of the Contribution Tax Improvements for Motivating the Culture of Giving."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73: 350-351.
- Hong, Moon-Ja. 2015. *Influential Factors on Nonprofit Public Agency's Collection of Contributions: Focused o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sis for the Master's Degree.

-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Eun-Jong.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Fundraising and the Expansion Method in Domestic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 Thesis for the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Department of Arts Management.
- Kim, Hyo-Suk. 2004. "A Study of Securing Financial Support for New York Public Library."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 133-140.
- Kim, Myeong-Ho and Jin-Hoe Kim. 2016. "A Study on the Contribution Taxation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3): 1183-1201.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7.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Korean Library Associa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6. *Korean Library Year Book 2016*.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oh, Dong-Jo and Kyung-Sook Park. 2013. "A Study on the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Using Do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84-186.
- Noh, Young-Hee. 2014. "A Study Analyzing Donation Cases for Establishing Library Corporate Donation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111-133.
- Oh, Dong-Geun and In-Sik Kim, 2003. "Suggestions to Activate Philanthropy including Gifts, Donations and Volunteerism for the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222-226.
- Shin, Hae-Jin. 2010. *A Study on Securing Transparency of Donation to Non-Profit Corporate Body*. Thesis for the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Ka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Tax Science.